

제 1311 호
1986.9.1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영보실
편집인: 공보관 이광우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간경동보관	간경동보관	간경동보관	간경동보관
집수일자	1986.9.1	집수일자	1986.9.1
처리과	간경동보관	처리과	간경동보관

시보

차례

- ◎ 규 칙
 - 제 2144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2
 - 제 2145 호 :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접수체행정처분규칙개정규칙 3
 - 제 2146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자교육실시규칙 25
 - 제 2147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3
- ◎ 고 시
 - 제 638 호 :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위치고시 33
- ◎ 사 령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2144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
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4 항, 다음에 제 5 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학과 및
기능시험)를 타시. 도에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실시 시. 도에
당해자의 응시원서 사본 및 합격
사실을 증명하는 종합성적표 사본
을 송부받은 후 나머지 시험만을
실시한다.

제 5 조 제 2 항 내지 제 6 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② 면허과장은 응시원서를 접수 받
았을 때에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실
질부에 접수순으로 기록되는 시험실
시 일자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원기시험 답안지는 별지 제 2 호
서식으로 하되, 수동식으로 채점하
는 경우에는, 붉은 색연필로 채점
하여야 하며, 오채점 정정시에는 두
줄을 치고 학과계장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④ 기능시험은 제 2 종 소형면허시험
에 준하여 실시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응시자는 반드시 안전장구(헬
멧)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기능시험은 시동이 걸린 상태
에서 출발하되, 시동이 꺼져 응
시자의 발이 땅에 닿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3. 전자채점 시설이 가설되지 않
았거나, 고장시에는 시험 소요시
간을 육상경기용 타임워치로 측
정한다.

⑤ 시장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운전
면허증을 신속히 발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규칙 제 39 조 제 1 항 2 호에 규정된
제 2 종 소형면허시험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라"
형 코스중 굴절코스와 폭선코
스의 전절만을 실시한다.

제 21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능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관이 동승치 않고 채점표만 채점기에 삽입한 후 응시자가 단독으로 주행 응시케 한다.

제 25 조 제 3 항 다음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운전면허시험 합격자가 운전면허증을 본인의 주거지로 우송하여 줄것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송료를 첨부케 하고 등기로 우송하여야 한다.

제 3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4 조 (면허행정처분)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과 처분절차는 법 제 78 조 및 규칙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5 조 삭제

제 36 조 삭제

제 37 조 삭제

제 38 조 중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 제 11 호 서식과 별지 제 12 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 11 호 서식 삭제

별지 제 12 호 서식 삭제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은 198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개정 규칙을 이거 공포한다.

198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2145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 78 조 및 동법 제 81 조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및 차등처리의 운전면허(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 104 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69 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 및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체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제치(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등을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법점=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제치)

3. "처분법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제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법점=누산법점-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제치)

=매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제치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제치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 68 조, 및 동법 제 80 조에 의하여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누산점수의 관리) ①누산점수는 3년간 관리한다.

②제 1항에서의 3년간이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이규칙 시행이전의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법점의 소멸) ①처분법점이 3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0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법점은 소멸한다. 이 경우 기간산정은 년월일을 기준한다. 이하 이조에 같다.

②과거 1년이상 위반 및 사고가 없었던 운전자가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도 인하여 받은 벌점이 30점 미만인 경우 그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3월 이상 위반 및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한다.

제 6 조 (누산점수 공제) ①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별표 1)에 도달하여 면허를 취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점수를 누산점수에서 공제한다.

1.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한 운전자 45점
2. 훈장 100점
3. 표창 90점
4. 대통령표창 80점
5. 국무총리표창 60점
6. 내무부장관표창 45점
7. 치안본부장표창 35점
8. 서울특별시장(시도지사 포함)표창 25점
9. 경찰국장표창 15점
10. 경찰서장표창 10점
11. 무사고운전자들의 표시장 45점

②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중의 특혜점수 총액은 각훈격의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포상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또한 공제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의 모든 포상에 대한 점수는 공제할 수 없다.

제7조(행정처분기준) ①면허취소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의 기준(별표1)에 도달하거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 기준(별표2)에 각각 해당하는 때에 처분한다. 면허취소의 경우, 제6조제1항의 특혜점수를 공제한 후 별표1의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

②면허정지는 법규위반시 정지처분 개별기준(별표3)의(1) 통고처분상 목(2) 즉상회부(형사입건 포함) 항목 및 교통사고 야기시 정지처분 개별기준(별표4)의(1) 사고결과와 다른 벌점기준과 (2)초차등 불이탈에 따른 벌점기준에 의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인 때에 정지처분하되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벌점이 30점 이상일 때는 그 위반 또는 사고발생일 이전의 처분벌점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정지기간을 산정한다.

제8조(정지처분기간 산정) 정지처분 기간은 당해 면허증을 취소한 시간부터 계산하고, 취소 요 관한 24시간을 1일로 합쳐 그 취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처분 절차) 1. 면허를 취소하는 때는 당해 운전자를 출석시켜 별표1호 서식에 의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별표2)제5항의 규정과 미관로 취소되는 경우나 상당한 사유없이 운전면허 취소를 위한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면허취소처분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별표 1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표 2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각각 붙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경우 경찰서장이 진술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시장에게 진술을 들어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③면허취소 대상자의 진술결과 취소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전자의 면허증을 즉시 회수하고 진술을 들은 날로부터 취소처분하되, 당해자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교부하며,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면허증과 진술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없이 취소상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으로부터 제 3항에 의하여 취소상신을 받은 시장은 취소해당자에 대한 운전면허대장의 기록사항등을 확인하는등으로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는 취소처분후 당해자에게 별지 제 2호 서식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 취소사실을 경찰서장에게 시달한다. 이 경우 취소처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면허의 정지처분 절차)

①경찰서장은 운전자가 별표 3 및 별표 4에 해당하는 위반 및 사고 야기시 벌점을 별지 4호서식의 위반사항 기록자료표 및 별지 제 5호 서식의 사고사항 기록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및 제 1항에 의하여 산출된 처분벌점이 제 7조 제 2항에서 정한 정지처분 기준에 도달하면 별지 제 6호 서식으로 정지처분을 결정후 별지 2호서식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당해자의 주소지와 연락처에 통지하고 결정일자 순으로 별지 7호서식에 기록후 면허증 반납일로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시 당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때는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활용한다.

③면허정지처분을 집행하는 때는 별지 제 8호서식의 교정교육통지서로 교정교육을 받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①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한다.

구 분	처분별점중에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처분별점중에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교정 교육시험성적		
80점 이상	20일 감경	10일 감경
60점 이상 80점 미만	15일 감경	8일 감경
60점 미만	10일 감경	5일 감경
<p>②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제 1항에 의하여 감경한 잔여집행일수를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 경우 벌점누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처분별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p> <p>제 12조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중)</p> <p>① 상습적 위반 및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는, 경지처분기준을 적용하고</p>		<p>자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날을 기준으로 과거 10월 이내의 기간중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이미 받은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개시일이 과거 10월 이내의 기간중에 포함된 경우만을 말한다)을 받은 회수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가산한다.</p>
과거 10월 이내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회수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 음		없음 (당해 처분별점에 따라 1점 1일로 계산)
1 회		30일 가산 (당해 처분별점일수 + 30일)
2 회		60일 가산 (당해 처분별점일수 + 60일)
3 회		90일 가산 (당해 처분별점일수 + 90일)

②제 50조 제 2항에 의거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면허증을 지정일까지 반납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그 기일 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에 면허증 반납치연 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집행한다. 다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는 적성검사시에 그 면허증을 회수하고 회수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제 13조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한계 등) ①정지처분 집행은 분할하여 집행할 수 없고 정지처분 집행일수는 계속적으로 365일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이 규칙에서 벌점을 감경하는 때와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감경 또는 가산함에 있어서 단자리수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면허증등 반환) ①정지처분 집행기간이 끝난후 보관하였던 면허증등에 대하여 본인이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본인의 가족이 면허증등을 반환요구할 때는 본인의 가족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반환하며, 수령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처리계장 (별지제 5호)의 수령자란에 성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정지처분이 끝나는 날이 일요일

이거나 공휴일인 때는 면허증등의 회수시간에 관계없이 그 전날의 공무시간이 끝나기 1시간전에 반환하며, 토요일오후 1시이후에 정지처분이 끝날때도 또한 같다.

③제 2항의 경우로 면허증등을 반환할때는 면허정지기간이 끝난것으로 간주한다.

④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금지 처분을 받아 운전금지 기간중에 출국하게 되어 그 면허증을 반환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조 (타법현위반자 행정처분)

①산림법 제 94조 동법시행령제 93조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은 산림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②산림법 위반으로 인한 정지처분은 산림법위반운전자 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별표 5)과 같다.

③산림법에 의하여 집행된 정지일수에 상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 16조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교통 사고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벌 점	내 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	제 41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액 1 밀리리터에 알콜 0.5 밀리그램, 호흡 1 리터에 알콜 0.25 밀리그램 이상) 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3	타인에게 운전면허대여(도난, 분실 제외)	제 78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소지자가 유면허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운전케 하였을 때 ○ 면허취득자가 타인의 면허를 대여 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로 운전하였을 때
4	결격사유	제 78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팔의 팔꿈치관절이 사울 많은 사람 · 양발을 전혀 쓸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일련 번호	위 반 항 목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벌 칙	내 용
5	적성검사미필 또는 불합격(수시 적성검사포함)	제 78 조	취소	○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를 미필하였거나 불합격한 때
6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제 78 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하였을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 78 조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이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무적차량 운전포함)	제 78 조	취소	○ 운행정차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차량운전포함)하였을 때(고의 과실 불문)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 78 조	취소	○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유괴, 불법 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 78 조	취소	○ 산림법 제 94 조와 동시행령 제 93 조의 규정액 위반하여 산림당국의 고발이 있는 때 · 원목 또는 죽자재(足枝材)인 부정업산물을 1세제곱미터 이상 직재 또는 운송하였을 때

일련 항목	위 반 항 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앞지르기 금지 위반	제 20 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차와 다른차가 나란히 진행할 때 앞지르는 행위 ○ 앞차가 다른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할 때 앞지르는 행위 ○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부근, 경사로, 경산, 급경사의 내리막 및 시장이 정하는 장소 ○ 법규규정과 경찰관위 지시에 의하여 정지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는 행위
6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제 24 조 제 48 조 제 3 호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동행하는 보행자의 동행을 방해한 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동행을 방해한 때 ○ 횡단도도 보행자 동행방해
7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난폭운전에 한함)	제 44 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로 (의식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난폭운 진행위 · 급진입 (급차선 변경) · 지그재그 운전시 · 도로의 좌우로 원들을 급조작 및 급제동하는 행위 ·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일단 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한 때

[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 항목				
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형사입건)	제 41조 ①	100	○혈액 1밀리미터에 대하여 0.5밀리그램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밀리그램이상 함유하고 운전할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형사입건)	제 41조 ②	100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찰관의 정요구에 불응할 때
2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 99조 제 120조	90	○출석지시서에 의한 출석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범칙금 납부명지서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석기간 또는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때
(별표 4) <u>교통사고악기시 정지처분 개별기준</u>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6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1명마다	20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1명마다	7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실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구	분	별 점	내 용
물 적 피 해 고	10만원마다	1	경비업소로 허가된 정비공장의 건축에 의한 차의 피해금액과 화물등의 피해금액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 점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제 50 조 제 1 항	30	교통사고 즉시 (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시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계역 에서는 3시간, 그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때.
		60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때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불이행	제 50 조 제 2 항	7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하였 을 때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기후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한 경우 를 포함한다)
		15	○경찰관 (경찰관서 포함) 에게 신고하 지 아니한 때 (물적피해 교통사고 야 기후 도주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를 포함한다)

<p>(비 고)</p> <p>1. 교통사고 야기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p> <p>2.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색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p> <p>3.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p> <p>4.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p>	<p>사고발생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p> <p>5. 물적피해액 10만원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물적피해에 따른 벌점은 50원을 넘지 못한다.</p> <p>6. 교통사고상 물적피해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측의 물적피해(차 및 화물의 피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p>
<p>(별표 5) <u>산립법위반운전자면허정지처분개별기준</u></p>	

일련번호	위 반 항 목	적용법조(산립법)	정지기간	적재 또는 운송수량
1	원목 또는 족장재(足長材)인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제 94 조	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제곱미터 이상 1세제곱미터 미만 ○ 0.5세제곱미터 미만
2	원목 또는 족장재 이외의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제 94 조	6 월 3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 원목 0.5세제곱미터 이상 1세제곱미터 미만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 ○ 소나무 원목 0.5세제곱미터 미만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

(별지 제 2 호서식) (뒷면)

* 알려드립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자가 처분집행 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저당된 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됩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11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별지 제 3 호서식)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운인 적사 가항	주 소		소속또는 직 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위반 및 처분 내용	적용법조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1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제 7 호서식)

운전면허정지처분집행처리대장

일련번호	신청사항		원래의 처분 일수	정지			정지			정지기간 (과-격)	정지기간		집행		해제			
	면허 번호	성명		출석 지정일	지연 일	가산 일수	교정 교육 일수	교정 사포 일수	감정 일수		모용 일수 (정지 일수)	년 월 일	년 월 일	계 장	과 장	계 장	파 장	석 장
							유 무				자 월 일							
											지 월 일							

제 1311 호시

제 1985.9.1

2-21

240

(별지제 8호서식)

계 호 교 정 교 육 통 지 서

① 면허번호 :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도로교통법 제 4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교육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교육장소	

년 월 일
경찰서장

2106-26 일 (1)
1985.1.28 승인

95 mm X 134 mm (신문용지 549/㎡)

(별지제 9호서식)

교 육 필 증

일련번호 | 성 인

면허번호 :

성 명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 49 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교 양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정 기	<input type="checkbox"/> 입 시	<input type="checkbox"/> 교 정
---------	------------------------------	------------------------------	------------------------------

년 월 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

2106-25 일 (1)
1985.1.28 승인

81 mm X 55 mm
(인쇄용지 (특급) 1209/㎡)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자교육 실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9.1

서울특별시시장 영 보 현

◎서울특별시규칙제 2146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전자교육 실시 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자교육 실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의 기준 및 절차를 시행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알차고 실효성 있게 실시, 운전자의 자질을 높이고 교통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자와 정기적 성검사를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 2.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교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3. 교통여건의 변화 및 교통관행의 제정, 개정, 제식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실시하는 교육

제3조 (교육일시 주관) ①정기교육과 별표1에 의한 교정교육은 도로교통안전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지부 (이하 "지부"라 한다) 에서 실시한다.

②임시교육 주관은 교육시마다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 (정기교육) ①정기교육은 신규면허증을 교부받을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교부전에, 정기적성검사자는 적성검사 수험만일로부터 3개월이 내에 실시한다.

- 1. 교육시간은 매회 2시간씩 실시한다.
- 2. 교육장소는 별표2와 같다.
- 3. 교육비용은 별표3에 의한다.
- 4.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청각교육 및 통신교육 방법에 의한다.
- 5. 교육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수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전에 주민등록증과 합격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 본인 여부를 각인 입장시킨다.

다. 교육을 끝난 자에 대하여는 협

회 이사장 명의로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교육필증을 발급하
 의 교육담당자가 확인필 인을
 날인한다.

라. 협회지부에서는 교육실시 결과
 를 익일 09:00 한 수강신청서를
 근거로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
 한 교육이수자 명단과 교육실시
 통계를 작성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마. 경찰국 면허과장은 본인이 제
 출한 교육필증과 협회에서 작성
 제출한 명부를 확인하여 면허증
 을 교부한다. 다만, 정기적성검사
 대상 교원은 교재 배부로 대체
 할 수 있다.

제 5 조 (교정교육) ① 교정교육은 별표
 1 에 의한 교봉범규 위반자 및 교
 본사고 야기자중 서울특별시운전면허
 점수계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처분점
 수가 30 점 이상으로서 행정처분통
 지를 받은자중 희망자에 대하여 실
 시한다.

1. 교육시간은 매회 4 시간 (강의및
 시정각 3 시간, 시험 1 시간)씩 실시
 한다.
2. 교육시간은 매일 13:00-17:00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

일은 제외한다.

3. 교육통지는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
 수계 행정처분규칙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규칙을 준용
 하여 경찰서장 명의로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교정교육 통지서
 를 발부한다.
4. 교육장소는 별표 2 에 의한다.
5. 교육내용은 별표 3 에 의한다.
6.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청각교육및
 문제은행식 출제방법을 활용한다.
7. 교육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수강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
 여야 하며, 수강전에 주민등록증
 과 교정교육통지서를 대조 본인
 여부를 확인한후 입장시킨다.

나. 교육을 필한자에 대하여는 협
 회 이사장 명의로 별표 4 에 의
 한 시험성적통지서를 교부하되
 교육담당자가 확인필인을 날인한다.

다. 협회지부에서는 수강신청서에 의
 한 교육이수자 명부 (별지 제 2
 호 서식)를 작성, 간인한후 일
 자별 말미에 통계를 첨부 규정
 른을 시장에게 교육실시 익일
 제출한다.

<p>8. 제 1호의 교정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후 별표 4에 의한 시험성적통지서를 본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감경받도록 한다.</p> <p>제 6 조 (임시교육) 교육은 교육필요시마다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실시한다.</p> <p>제 7 조 (교육기록의 보존) ①교육에 관한 기록중 교육이수자 명부와 교육일지의 보존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기타 서류는 1년간으로 하되 폐기일은 6월말일과 12월말일로 한다.</p> <p>②폐기일차는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의한다.</p> <p>제 8 조 (교육실시상의 유의사항) ①경찰서에는 교통간부가 협회에서는 연사규정에 의한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교정교육담당자는 사전에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강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p> <p>③교육장에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의 정리 및 철서유기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9 조 (확인감독) 시장은 협회지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한다.</p> <p>제 10 조 (보고) 협회지부장은 여할 교육실시결과를 시장에게, 시장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②(자동차운전자 교육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의 교정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다.</p>
---	---

(별표 1)

교 정 교 육 대 상 (11 개항목)

번호	위 반 내 용	법 조
1	주위중 전금지	제 43 조 2
2	발서기간 또는 벌칙금 상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시각까지 속죄를 받지 아니한때	제 99 조 제 120 조

번호	위 반 내 용	법 조
3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제 50 조 ①
4	교통사고 야기시 신고불이행	제 50 조 ②
5	신호위반	제 5 조
6	중앙선침범	제 12 조
7	차선위반	제 13 조
8	속도위반 (20 km/h 초과시)	제 15 조
9	앞지르기 금지	제 20 조
10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제 24 조 제 18 조 3호
11	난폭운전	제 44 조

(별지 2)

교 육 장 일 랑 표

구 분	장 소	위 치	비 고
정 기	1, 2종 면허시험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9 (강남시험장)	
"	"	서울 도봉구 상계동 608 (도봉시험장)	
"	원동기, 소형면허시험장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10 (한남교육장)	
교 정 관	교통안전교육 중앙회	서울 중구 신당5동 436 (十, 배명교회)	

(별지 3)

운 전 자 교 육 과 목

○ 정기교육

교 육 과 목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1. 교통여건 및 교통사고	(1) 교통여건 추세 (2)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강의 또는 통신교육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2. 교통도덕	(1) 운전자의 사명 (2) 운전자의 자세	강의
3. 교통방법	(1) 자동차의 운행방법 (2) 운전자의 의구 (3)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의 특별	
4. 자동차의 점검	(1) 점검요령 (2) 고장발견 및 조치요령	
○ 암시교육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1. 교통여건의 변화		강의 또는
2. 교통관계 법령 개정사항(개정 또는 폐지사항 포함)		통신교육
3.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		
○ 교정교육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1. 교통도덕	(1) 운전자의 사명 (2) 운전자의 자세	시정각 및 강의
2. 교통질서 지키기	(1) 교통질서의 중요성 (2) 운전자 실천사항	
3. 교통법규	(1) 자동차의 운행방법 (2) 운전자 준수사항	
(별표 4)		
<u>시 험 성 적 통 지 서</u>		확 인
성 명 :	면허번호 :	25 \times 17 mm
시험성적 :	점 ()	
도로안전 교육시험 성적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이 사 장		
* () 은 한글로 기재		115 mm \times 77 mm 컴퓨터용수종지

(별지 제 1 호서식)			
○ 신규자 교육용			
자동차운전교육수강신청서			
연력시험 응시번호 :		일련번호	
		면허	1 종 보통·대형·특수
		종별	2 종 보통·소형·원자
주소			
성명	성 별		주민등록
	남	여	번호
위와같이 신규교육을 수강코자 신청합니다.			
198 . . .			
위 신청인 인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귀하			
32절지 (신문용지)			

○ 적성검사 자동차운전교육수강신청서					
				인련번호	
운전면허번호:				면허	1종 보통·대형·특수
				종별	2종 보통·소형·원자
수속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운전하는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 특수			교통사고원인
차종	자가용	버스, 승용, 화물, 2륜			법규위반내용
운전경력	년 개월		금년들어 지금까지		
			교정교육을 받은 회수		
위와같이 적성교육을 수강코자 신청합니다.					
198 . . .					
			위 신청인 인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32페이지 (신문용지)					

(별지제 2 호서식)				
자동차운전자 교육이수자명부				
일련번호	수강년월일	면허종별	성명	비고
(16 절지 신문용지)				
* 시험실적은 비교란에 기재 * 경찰서는 면허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별지제 3 호서식)				
육 필 증			일련번호	검 인
면허번호 : _____ 성 명 : _____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 49 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교양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 <input type="checkbox"/> 임시 <input type="checkbox"/> 교정			
년 월 일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2106-25 일(1) 85.1.28 승인			81 mm X 55 mm 인쇄용지 (특급) 120 g / m ²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 9. 1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2147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건설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액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4. 건설공제 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전기공제 조합법에 의하여 전기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5. 국제, 지방채 기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6.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제 6 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 5 항중 "상수도공채를"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제 2 항 규정의 보증서 또는 증권을"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638 호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위치고시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 2 조 (조례 제 2093 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강관리사업소의 위치를 결정 고시한다.

- 사업소 위치: 서울특별시용신구 한강로 3가 65번지 22호 삼익빌딩 5층

1986. 9. 1

서울특별시장

사 령

1986. 8. 30

령제 381 호

성명	발령부서	현부서	직급
이순신	한강관리사업소	시민과	지방행정주사
김태홍	“	윤산구	지방행정주사보
이석환	“	“	“
김재훈	“	동대문구	“
최종욱	“	성북구	“
신홍주	“	성대문구	“
최순진	“	동작구	“
이우성	“	관악구	“
노태석	“	아동병원	지방행정서기
윤경학	“	공무원교육원	“
서중훈	“	북부건설사업소	“
이영진	“	성동구	“
배종순	“	동대문구	“
이중복	“	중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지용	“	“	“
이하경	“	동대문구	“
이병상	“	성동구	“

령제 382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계봉	한강관리사업소	하수과	지방토목기사
김성정	“	주매계량과	“
최혜인	“	“	지방토목기사보
도성철	“	구로구	“
이부영	“	중로구	지방토목기원
김남수	“	중구	“
김달경	“	도봉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홍대	한강관리사업소	영등포구	지방토목기원보
김재문	"	구로구	지방화공기사
김길호	"	도봉구	지방화공기원
김종남	"	성동구	"
홍성우	"	영등포구	지방화공기원보
박희창	"	마포구	지방농림기사
권혁수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농림기사보)	성북구	농림기사보
안재현	한강관리사업소	동작구	지방농림기사보
남상수	" (지방농림기원)	양정과	농림기원
이윤균	한강관리사업소	종로구	지방농림기원
윤석암	"	관악구	"
장경호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농림기원보)	강서구	농림기원보
황인구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농림기원보)	은평구	"
이경렬	한강관리사업소	건설자재사업소	지방전기기사보
진명수	"	동축과	지방수산기원

1986.9.6

령제 383 호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직급
이철법	구로구	2호봉	지방화공기사보시보
이성재	동대문구	1호봉	"
성시영	한강관리사업소	4호봉	지방기계기사보시보
모봉국	북도수원지사무소	3호봉	지방화공기사보시보
이영석	일사수원지사무소	"	"
박석문	도봉구	"	"
박병문	영등포구	"	"
류관식	관악구	4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남궁용	동대문구	3호봉	"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직급
김용경	도관봉구	3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이영희	관악구	1호봉	1호봉
김완규	서대문구	1호봉	1호봉
이유행	강남구	1호봉	1호봉
박창수	강동대문구	1호봉	1호봉
최성규	서대문구	2호봉	2호봉
전재성	강서대문구	3호봉	3호봉
조태섭	강동구	4호봉	지방토목기원보
이기성	한강관리사업소	3호봉	지방토목기원보시보
김성수	강경서구	1호봉	1호봉
박경하	강중구	1호봉	1호봉
박승배	관악구	1호봉	1호봉
송근호	성안동구	1호봉	1호봉
장원희	은평구	1호봉	1호봉
최동일	은동구	6호봉	6호봉
전호관	은평구	3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황광현	성북구	1호봉	1호봉
임한표	강서구	6호봉	지방농림기원보
박중인	도봉구	4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박윤화	동구	3호봉	3호봉
백운석	도봉구	5호봉	5호봉
함은석	주마포구	3호봉	지방농림기원보
송동영	관악구	2호봉	지방농림기원보시보
최한규	마포구	3호봉	3호봉
석나미	중구보전소	3호봉	지방간호원
우미정	강남구보전소	1호봉	지방간호원시보
조경숙	1호봉	1호봉	1호봉
김명수	성동구보전소	1호봉	1호봉
우경갑	관악보전소	1호봉	지방간호원

1986.9.1								명제 384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이천수	중구		8	지방행정사무관	중구	건설관리과장직대	지방행정주사		
유지관	용산구		9	"	용산구	민방위과장직대	"		
최종문	관악구		8	"	관악구	청소과장직대	"		
김영남	동작구		8	"	동작구	위생과장직대	"		
박희수	내무부		8	지방행정사무관	감사담당관	윤립직준비단과전	지방행정주사		
권대경	철북구		8	"	철북구	세마을과장직대	"		
								명제 38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이중호	세종문화회관	지방전기과	5	세종문화회관	전기계장직대	지방전기과			
이제형	동작구	지방농림과	8	동작구	공원녹지과장직대	지방농림과			
유오식	강동구	지방토목과	6	강동구	도시정비과장직대	지방토목과			
노경찬	도봉구	"	6	도봉구	"	"			
임동혁	한강관리사업소	지방화공과	6	환경과	"	지방화공과			
								명제 38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임성수	시립대학	사무국장	9	지방서기관	시립대학	사무국장직대	지방행정사무관		
조대룡	마포구	건설국장	4	"	마포구	건설국장직대	"		
전장하	성북구	"	6	"	성북구	"	"		
윤정중	강서구	"	9	"	강서구	"	"		
길기석	"	도시정비국장	8	지방건축기정	"	도시정비국장직대	지방건축기과		
임동국	성동구	건설국장	5	지방토목기정	성동구	건설국장직대	지방토목과		

명제 387 호			
성명	발령부서	원부서	직급
이훈근	환경청파견 ('86.9.1 ~ 86.10.31')	도농구	지방환경조사보
서 울 특 별 시 장			